

규 칙

제25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허유인

2022년 3월 21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55호

붙임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순천시 기본조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선임 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 간으로 한다.</u>	<u>제3조(임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의 임기는 순천시 기본조례 제3 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